

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경계 변경 등 통리반을 정비하고 지번 현행화 및 중복·오기 사항을 정정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통리반 정비 : 경계 변경, 통합·분리(15개반 감소)

읍면동	현 행		개 정		변경내용
	통·리	반	통·리	반	
산동읍	신당1리	1 ~ 4반	신당1리	1 ~ 4반	경계변경
	신당2리	1 ~ 3반	신당2리	1 ~ 3반	경계변경
	인덕2리	1 ~ 2반	인덕2리	1 ~ 2반	경계변경
선 주 원남동 (2개반 감)	9통	2반, 3반	9통	2반	반 통합(-1)
	10통	3 ~ 5반 일부	9통	3반	인근 통편입(+1)
		3 ~ 5반 일부 (9통 3반 편입 제외 구역)	10통	3반	반 통합(-2)
신평1동 (4개반 감)	3통	1~5반	3통	1반	반 통합(-4)
		6반		2반	변경
공단동 (7개반 감)	2통	1반, 2반	2통	1반	반 통합(-1)
		3반		2반	변경
	8통	1반, 2반	8통	1반	반 통합(-1)
		3반, 4반		2반	반 통합(-1)
		5 ~ 8반		3 ~ 6반	변경
	11통	5반, 6반	11통	5반	반 통합(-1)
	12통	1반, 2반	12통	1반	반 통합(-1)
		3반		2반	변경
	14통	1반, 2반	14통	1반	반 통합(-1)
		3반, 4반		2반	반 통합(-1)
상 모 사곡동 (1개반 감)	2통	4반, 5반	2통	4반	반 통합(-1)
		6 ~ 9반		5 ~ 8반	변경
양포동 (1개반 감)	2통	1 ~ 4반	3통	4반	반 통합(-3) 및 인근통 편입
	6통	1반	6통	1반, 2반	반 분리(+1)
		2반	2통	1반, 2반	반 분리(+1)

- 지번 현행화 및 중복·오기 사항 정정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경계 변경 등 통리반을 정비하고 지번 현행화 및 중복·오기 사항을 정정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경계 변경 등 통·리·반 조정을 통해 통·반 간 가구 수의 과대·과소 문제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됨.
- 또한, 지번 오류는 주민등록, 토지대장, 인허가 등 각종 행정업무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번 현행화 및 중복·오기 사항을 정정한 것은 행정의 정확성과 업무 처리의 합리성을 높여 전체적인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됨.
- 다만, 일부 지역의 반 통합 과정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통·반 단위가 축소되거나 변경될 경우 민원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, 시행 이후에도 주민설명 등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.